

# 대금 지급 약정서

삼성전기 주식회사(이하"갑"이라 칭함)와 \_\_\_\_\_(이하"을"이라 칭함)은 "을"이 "갑"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수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- 다음 -

## 제1조 (적용범위)

본 약정서는 기존에 "갑"과 "을"이 체결한 물품대금의 수주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약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을은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.

## 제2조(구좌의 개설 및 통보)

- 을은 갑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수수하기 위하여, 갑이 지정한 은행(이하"병"이라 칭함)과 외상매출채권전자(담보)대출거래 약정을 체결 완료하고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을이 본 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을의 제1항의 제출서류상 기재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, 변경사항을 갑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- 을의 외상매출채권전자(담보)대출 은행정보는 다음과 같으며, 외상매출채권전자(담보)대출 거래은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 외상매출채권전자(담보)대출 거래은행: \_\_\_\_\_은행(우리/외환/기업은행 중 택1)
- 결제은행 정보 : \_\_\_\_\_은행, \_\_\_\_\_지점, 계좌번호\_\_\_\_\_

## 제3조 (대금의 지급)

- 갑은 병에게 을의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명세를 제공하고 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로써 을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을은 병이 갑에게 제1항을 통지한 후,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, 병과 체결한 B2B외상매출채권전자(담보)대출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4조 (대금지급의 유예)

을은 제2조 제3항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갑이 대금지급을 유예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.

## 제5조 (책임)

- 제3조 1항에 따라 갑이 병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명세 제공 및 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접수 후 을과 병간에 대금수취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갑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을로부터 변경사항을 서면 통보받기 전까지 종전의 통보사항에 따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 제6조 (약정기간)

본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시행하며, 약정 종료 1달전에 갑 또는 을로부터 약정 종료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, 그 이후에도 같다.

## 제7조 (기타)

- 일방이 해지 통보시에는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, 법적 분쟁 발생시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.

년 월 일

(갑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번지

(을)

삼성전기 주식회사

대표이사      경      계      현



(인)

(법인 또는 개인인감 날인)